# 사회적기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콘텐츠는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익, 정관 · 규약 등, 이윤의 사용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 및 변경신고 의무,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회적기업 ..... 1
1. 사회적기업 알아보기 ..... 4
1.1.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 4
1.1.1. 사회적기업이란? ..... 4
2.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9
2.1. 인증 요건 ..... 9
2.1.1. 조직 형태 ..... 9
2.1.2. 유급근로자 고용 ..... 11
2.1.3. 사회적 목적 실현 ..... 12
2.1.4. 의사결정구조 ..... 15
2.1.5. 영업활동 수익 ..... 16
2.1.6. 정관·규약 등 ..... 17
2.1.7. 이윤의 사용 ..... 19
2.2. 인증 절차 ..... 21
2.2.1. 인증 신청 및 심사 ..... 21
2.3. 인증 유지·변경 신고 ..... 24
2.3.1. 사업보고 의무 ..... 24
2.3.2. 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 26
3. 사회적기업 지원받기 ..... 28
3.1. 설립 및 운영지원 ..... 28
3.1.1. 교육·성장지원 등 ..... 28
3.2. 재정지원 ..... 29
3.2.2. 시설비 등 지원 ..... 29
3.2.3. 세제혜택 ..... 30

# 1. 사회적기업 알아보기

## 1.1.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 1.1.1.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동일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 사회적기업 육성배경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쪽 참조).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쪽 참조).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쪽 참조).

##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유형

▪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2쪽).

| 구분 | 내용 |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br>▪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 지역사회 활성화 | ▪ 지역사회 통합<br>▪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 사회서비스 확충 |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br>▪ 공공서비스 혁신 |
| 윤리적 시장 확산 |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br>▪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구분 | 내용 |
|---|---|
|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② 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③ 지역 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br>(가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br>(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br>(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④ 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br>☞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⑤ 기타 (창의·혁신)형 |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br>☞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표(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98쪽)

| 사회적기업 |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
|---|---|---|---|
| | | 지역형 | 부처형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근거 | 조례·규칙 | 지침 |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주관 | 광역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
| ① 조직형태 | 요건 | ① 조직형태 | |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해당 없음 |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해당 없음 |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경영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6쪽 참조)

| 지원분야 | 지원제도 | 지원대상 | |
|---|---|---|---|
| | | 예비 | 인증 |
| 교육·성장지원 등 |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br>▪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br>▪ 전문컨설팅 | O | O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X | O |
| 시설비 등 |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 △<br>(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O |
|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O | O |
| 세제혜택 | ▪ 법인세·소득세<br>▪ 취득세·재산세<br>▪ 개인지방소득세<br>▪ 부가가치세 면제<br>▪ 기부금 인정 | X | O |

## 2.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2.1. 인증 요건

#### 2.1.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등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예비사회적기업 동일)**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
>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함.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함
>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함
>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6-37쪽 참조)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 구분 | 내용 |
| --- | --- |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 당연 불인증 |
|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 |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 |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불인증**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신고(허가) 및 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6쪽 참조)

※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 판단

▪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42-43쪽 참조).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 --- |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br>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br>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br>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 제외 가능<br>(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96쪽 및 270쪽 참조) |

| 유급근로자의<br>인정범위 |
| --- |
| Q.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나요?<br>A. 아니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유급근로자로 인정됩니다.<br>다만,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6쪽 참조) |

※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3.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존립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 보육 서비스
-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53쪽 참조).

| 유형 | 세부심사기준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br>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br>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br>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br>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br>※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
|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br>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br>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br>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br>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
| 기타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사회적가치지표 참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다만,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94쪽 및 268쪽 참조)

※ 사회적기업 유형별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회적기업 알아보기-사회적기업 이해하기-사회적기업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구조의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판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실제 운영 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77쪽 참조).

-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 주된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제한의 필요성**

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7쪽 참조).

※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5. 영업활동 수익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영업활동 수입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1쪽 참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함

▹ 자본 완전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노무비에 포함·제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2쪽 및 84쪽).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 노무비 | |
|---|---|---|---|
| 포함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br>※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 포함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
| 제외 | 영업활동과 무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가입비 및 단순 지원금 등 |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 등 |

**사회적기업 영업활동 증빙자료의 공신력**

Q.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기관이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영업활동 증빙자료는 수회에 걸쳐 검토받게 됩니다. 공증 또한 등기와 같이 반드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를 검토해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7쪽 참조)

※ 사회적기업 영업활동 수입 판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6. 정관·규약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 정관·규약 등의 필수사항

▪ 정관등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6쪽).

1.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에 관한 조항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
2. 사업내용: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이 추가되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여야 함
3. 명칭: 조직의 명칭은 약자가 아닌 공식적인 전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규정에 따름. 그 밖에 비영리조직은 사업비 차입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나 사무국·사무처 등의 설치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 유급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함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10.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등을 갖추어야 하며 1. 사회적 목적,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정관등의 필수사항**

Q.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중인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는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를 갖추지 않은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참조)

※ 정관의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발기인의 정관작성-정관의 공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7. 이윤의 사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제9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재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내용과 구별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0쪽)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판단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9쪽).

▹ 신청기업의 정관에 해당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 세부 심사 기준 |
| --- |
| 예비사회적기업 중<br>이윤배분이 가능한<br>조직은 지정<br>이후부터 이윤의<br>2/3 이상을 사회적<br>목적에 사용하여야<br>함(지정<br>이후 이윤<br>사용내역 검토)<br>※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br>수입금 사용,<br>이익 배당,<br>수익의 배분<br>등에 관한<br>사항을 확인함<br>(고용노동부,<br>『사회적기업 인증<br>업무지침』, 89쪽<br>참조)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 인증 절차

### 2.2.1. 인증 신청 및 심사

※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받아보세요.**

**인증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인증 신청서 및 인증 요건 충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접속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방법 |
| --- |
| (공모) 연중 1~2회 이상 자치단체 또는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br>(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br>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br>및 관련 서류를 제출<br>(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br>통해 온라인 신청<br>(지정기간) 3년<br>※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br>(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br>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br>(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참조)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따라 심사를 준비해보세요.**

※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551-2024를 누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권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인증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 |
|---|
| 1. 인증계획 공고 |
|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
| 2. 인증상담 및 안내 |
|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
| 3. 신청서 접수 |
|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br>※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br>현장실사 계획 수립 |
| 5. 현장실사 |
|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br>인증요건 검토서 작성<br>※ 기타(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관련 SVI 평가 시행 |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br>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
|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b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 8. 인증심사 |
|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br>제시<br>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br>※ 사전심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
|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 인증 결과 공고<br>인증서 교부<br>※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br>발급 |

※ 권리구제 등 그 밖의 사항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 인증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단서)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인증의 제한

-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전단).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지정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 --- |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 2. 지정(변경)신청<br>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br>※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 3.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
| 4. 지정심사 및 지정 |
| 5.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인증의 반납**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15쪽).

▹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수리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반려 또는 취소절차 진행

> ※ 인증·지정 절차, 인증·지정 취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인증 유지·변경 신고

### 2.3.1. 사업보고 의무

## 사회적기업은 매년 경영활동에 대한 사업 보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3호).

>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침에 따라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점검 및 사업보고서 평가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부실 운영을 방지합니다.

### 평가 및 경고·시정명령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시정명령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01쪽)

사유 발생 ▶ 경고 및 시정명령 ▶ 시정결과 보고 ▶ 결과 보고·통보 ▶ 통계관리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 ※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 내 최신 공고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2. 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관등 변경 신고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29쪽)**

변경 신고 ▶ 접수 및 검토 ▶ 현장조사 (필요시) ▶ 시정요구 (필요시) ▶ 통보

**절차 세부 내용**

- (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0-131쪽)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 √ 변경일의 기산점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 함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 √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 √ 변경일의 기산점은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허가(인가) 통지문을 수령한 날]로 함
    -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사결정구조는 인정함
-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1쪽)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위반시 제재**

-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사회적기업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 확장·업종 변경**

Q.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오.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 덧붙여,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9쪽)

※ 정관등의 변경, 지부 설립·폐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회적기업 지원받기

### 3.1. 설립 및 운영지원

#### 3.1.1. 교육·성장지원 등

※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및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지원 및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판로·회계 등 교육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사회적기업 포털-정책소개-사업소개-성장지원 참조).

▹ 주요사업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주요내용 |
|---|---|---|
| 온라인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운영 | 사회적기업 종사자, 활동가, 청소년·청년, 예비창업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 사회적기업 경영 기획·전략,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판로 등 교육대상자별·분야별 다양한 교육 제공 |

▹ 온라인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돕습니다(사회적기업 포털-정책소개-사업소개-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참조).

▹ 입주대상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진입계획과 의지가 확고한 회원기업

√ 법인이 아닌 창업팀도 사회적기업 발전 가능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함

▹ 입주기간

√ 최대 2년(1회에 한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전문컨설팅**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을 통한 마케팅 교육, 맞춤형

코칭, 선택형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사회적기업 포털-정책소개-사업소개-판로지원 참조).

▹ 지원유형

| 구분 | 내용 |
|---|---|
| 라이트형 | 지속 가능한 기업 SNS 운영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입점 대행, 키워드 및 바이럴 광고 |
| 집중형 | 기업 또는 상품 브랜딩, 인플루언서 및 체험단 마케팅, 브랜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사회적기업 포털-정책소개-사업소개-판로지원 참조).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 구분 | 내용 |
|---|---|
| 직접구매 |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

> ※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3.2. 재정지원

#### 3.2.2.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시설비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6쪽).

| | |
|---|---|
| 시설비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br>※ 미소금융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함 |

※ 사회적기업의 시설·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열매나눔재단 누리집(merryyear.org),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정부의 자금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연구개발, 시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규모화를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원 추가 조성”, 2023.3.2. 1면).

▹ “모태펀드(Fund-of-Funds)”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함

▹ 고용노동부와 민간의 출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가 결성되며, 투자운용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투자대상 기업을 직접 발굴·투자함

▹ 투자된 자금은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확충에 활용되어 기업발전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투자조건, 투자방법, 운용사 선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및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3.2.3. 세제혜택

**사회적기업으로서 조세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법인세·소득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취득세·재산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의 50%, 재산세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개인지방소득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 및 제167조의2제1항 참조).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

▹ 교육 용역으로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기부금 인정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함(「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손금산입한도액 및 기부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부 나눔』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세제혜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